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자료집

□□ 일시 □□ 2007. 4. 4.(수) 14:00 ~ 18: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실(13층)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일 정 표

사회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시간		내 용
14:00 ~ 14:05	개 회	사회자
14:05 ~ 14:10	소 개	사회자 : 발제 및 지정토론자 소개
14:10 ~ 14:40	발 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 - 윤기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14:40 ~ 14:50	휴 식	
14:50 ~ 15:40	토 론	【정 부】 - 신인철 팀장(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 신승렬 사무관(중앙인사위원회 능력발전과)
		【학 계】 - 임재홍 교수(영남대학교) - 송기춘 교수(전북대학교)
		【법조계】 - 송병춘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15:40 ~ 15:50	휴 식	
15:50 ~ 16:20	토 론	【단 체】 - 이창수 대표(새사회연대) - 오완호 사무총장(한국인권행동) - 김영원 활동가(인권운동사랑방)
16:20 ~ 17:20	자유토론	참석자
17:20	정 리	사회자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목 차

발 제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 1
윤기원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토 론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33
신인철 팀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토론키료 35
신승렬 사무관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공청회 토론키문 39
임재홍 교수 (영남대학교)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토론키문 43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 인권교육법안 공청회 토론키문 49
송병춘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키문 51
이창수 대표 (새사회연대)
- 인권교육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토론키문 55
오완호 사무총장 (한국인권행동)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59
김영원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에관한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 내용

윤 기 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I.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및 의의

□□ 제정의 필요성

가. 범국가적, 전사회적 인권의식 제고 필요

- 모든 개개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의무인 인권교육을 전 생애에 걸쳐 받을 수 있도록 인권교육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범국가적, 전사회적 인권의식 제고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도에 실시한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연구'에 의하면 발령 이후 인권교육 연수 경험이 있는 비율이 16.1%에 불과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도에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일반인의 92%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반해, 5.3%만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인권교육을 받을 기회가 매우 적었음
- 인권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일본은 이미 2000년에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필리핀은 헌법에 각 교육기관이 인권존중을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페루도 2002년부터 인권교육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나. 국제인권협약의 이행

-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유엔의 인권교육에 관한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국가 의무 수행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권리협약 제29조,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조, 비엔나선언의 제33-34절과 제78-82절, 유엔 인권교육 10개년 계획,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

○ 인권교육관련 주요 국제협약

구분	내용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2항	- 교육은(…)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사회권규약 제13조 제1항	- 이 규약의 당사국은 (……)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인종차별철폐협약 제7조	- 협약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 및 이 협약의 제목적과 원칙을 전파시키기 위하여 의무를 진다.
고문방지협약 제10조 제1항	- 개인의 구금·심문 또는 처리에 관여할 수 있는 민간이나 군의 법집행 요원·의료인·공무원 및 그 밖의 요원들의 훈련과정에 고문방지에 관한 교육 및 정보가 충실하게 포함되도록 보장한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0조 (C)	- 모든 수준 및 모든 형태의 교육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해(……) 교육을 장려하며 특히 교과서와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수방법의 개선을 기함
아동권리협약 제19조 제1항, 제29조	- 당사국은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b)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 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비엔나인권선언및 행동계획 I부 33~34절, II부 78~80절	- 세계인권대회는 인권교육 과목을 채택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모든 국가가 이를 이행하기를 촉구한다(제33절). - 각국 정부는 정부간 기구, 국가 인권기구, 비정부단체들의 도움을 받아 인권 의식과 상호관용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제82절).

○ 한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사항

구분	최근 최종견해	인권교육 관련 문제영역 및 주요 권고
사회권 규약	2001. 5.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이 인권관련 종사자들의 필수교육과목에 포함되지 않음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증진을 위한 교과과정 재평가 •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 실시
자유권 규약	1999.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인권교육 지속 • 사회공공단체 직원, 의료관계 종사자를 포함한 인권관계 전문가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시행할 것
인종차별 철폐협약	2003. 1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차별행위에 관한 국내적 구체조치, 차별사건에 있어 배상을 위한 법적 수단, 협약 제14조에 따른 개인청원절차 등에 관한 정보 확산 및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
고문방지 협약	1996. 1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검찰 등 법집행 공무원과 의료인들에 대한 인권교육

여성차별 철폐협약	1998. 7.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가, 의료인, 법집행관등에 대한 성인지적 훈련 등 종합 대책 마련 • 직장내 성희롱금지 및 신고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아동권리 협약	2003. 1.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아·장애아·혼외출생아동 차별 근절을 위한 공공 교육캠페인의 개발 • 협약 제29조의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한 교육정책 수립 • 일반대중 및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권 인식제고 공공캠페인 전개 • 아동관련전문가(교사, 사회사업가, 판사, 법집행관, 심리학자, 보건인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

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사전 예방

- 구금·보호시설, 군대,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의식을 고취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특히, 최근에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증가에 따라 이에 대한 편견·차별행위 예방을 통한 사회통합의 필요성 제기
- 2006년 12월말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22,581건으로 인권침해사건 18,035건, 차별행위 2,841건으로 연평균 4,500여 건 발생

구분	'01.10~'02	'03	'04	'05	'06	합계
인권침해	2,833	3,041	4,627	4,199	3,335	18,035
차별행위	189	358	389	1,081	824	2,841
기타	571	416	352	337	29	1,705
합계	3,593	3,815	5,368	5,617	4,188	22,581

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 미비에 따른 별도 입법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 업무라는 것과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 소극적 규정만 있어 상대기관의 자발적 협조 없이는 인권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만으로는 인권교육 확산·강화가 곤란
- 인권교육을 체계적이고 실효성있게 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직법적인 성격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아니라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와 다른 국가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제정의 의의 및 기대효과

가. 인권교육 활성화의 계기 마련

- 인권교육의 개념 및 기본원칙을 통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 추진의 기반 마련
-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학교 및 인권교육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한 인권교육의 촉진

나.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예방의 효과를 거두고, 인권교육을 통하여 우리사회에서 개인적 기본권 보호 강화 및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등의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임
- 법령·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 실현에 이바지함

Ⅱ. 국내외 유사사례

□□ 국내 사례

가. 통일교육지원법

- 연 혁 : 1999년 제정·시행 중 통일교육 체계 정비 및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운영 등을 포함하면서 2005년 개정
- 목 적 : 통일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규정

○ 구 성

제1조(목적)
제2조(정의) : 통일교육, 지역통일교육센터
제3조(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평화적 통일지향 등
제3조의2(통일교육 기본사항) : 기본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 거처도록 함(2005 신설)
제4조(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통일부장관 소관
제5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 통일부에 설치, 25인 이내 중 7인 국회추천
제6조(정부의 임무)
제6조의2(공공시설의 이용) : 통일교육실시 하는 자는 공공시설 이용가능(2005신설)
제6조의3(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운영) : 통일교육 실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2005신설)
제7조(통일교육의 반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교육훈련기관 등
제8조(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진흥) : 통일부장관 교육인적원부장관에게 요청, 반영 노력, 대학에 통일문제 학과설치, 강좌개설, 연구소설치 권장
제9조(통일교육수강의 요청 등)
제10조(통일교육협의회) : 통일부장관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 설립
제11조(고발) :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통일교육 수사기관에 고발

나.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연혁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2005. 12. 29. 제정)
- 목적 :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
- 구성 : 5장 32조로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문화예술교육-학교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 교원,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창조력함양지향 및 교육기회균등보장 제4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문화예술교육받을 권리와 책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p>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등</p>	<p>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시행 등 11개 사항 추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 단체·교육청간 상호협력체제 구축</p> <p>제7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문화부장관 종합계획 수립시 협조요청</p> <p>제8조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의 설치 등)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설치</p> <p>제9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시·도에 설치</p> <p>제10조(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재단법인설립,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제도 도입</p> <p>제11조(경비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원·지원센터에 재정지원</p> <p>제12조(공공시설의 이용)</p> <p>제13조(교육시설 등의 평가)</p>
<p>제3장 학교문화 예술 교육의 지원</p>	<p>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협조하되 학교교육여건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함</p> <p>제15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교육활동 시설 장비 등</p> <p>제16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p> <p>제17조(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p> <p>제18조(지역사회와 지원체제 구축) 문화예술인 등의 학교공연· 전시상영 지원</p> <p>제19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p>
<p>제4장 사회문화 예술 교육의 지원</p>	<p>제20조(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p> <p>제21조(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p> <p>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p> <p>제23조(지역 사회문화 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p> <p>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p> <p>제25조(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방과후, 휴일 및 방학기간 동안 학교시설 이용, 폐교이용</p> <p>제26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p>
<p>제5장 문화예술 교육 전문인력 양성</p>	<p>제27조(국가 등의 의무)</p> <p>제28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관) 교육기관지정 제도입</p> <p>제29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p> <p>제30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교육기회제공 등)</p> <p>제31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배치): 의무배치사항은 2007.1.1. 시행</p> <p>제32조(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p>

□□ 해외 사례

국명	입법 형태	주요 내용	비고
일본	◎관련법률제정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개발에 관한법률	-인권교육 개념 정의(제1조) -정부 및 지자체에 인권교육시책 수립 및 실시의무 부과(제4, 5조)	-추상적 · 선언적 법률 -법무성이 주관 부처
필리핀	◎헌법 · 행정명령 등에 관련 사항 규정	-헌법 제14조제3항(1987년) 모든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헌법에 대한 학습을 포함 시켜야 하고, 인권존중을 교수 -행정명령 제20호(1986년) 체포 및 수사인력의 인력의 인권 교육 의무화 -행정명령 제27호(1986년)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권학습을 포함	-단일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헌법 · 행정명령 · 대통령령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
페루	◎헌법에 명시	- 헌법 제14조(1993)조 군과 민간의 교육기관에 대한 헌법 및 인권교육의 의무화를 확인	
	◎관련법률제정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전과 및교육을위한 국가계획수립을위한법률	- 헌법 제14조 확인(제1조) - 헌법교육 시 생명권, 자유권, 명예권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할 것(제2조) - 인권교육 시 국내법 및 국제법상 기본권 보장은 물론, 국제조약과 국제협약 등의 엄격한 이행 관련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제3조) - 이상의 인권교육 관련 국가계획을 법률 공포 후 120일 이내에 수립할 것(제4조)	

Ⅲ.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가. 주요 동향

- 2004. 4. : 국회 법사위 국회의원(정성호위원, 이원영위원)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으로서 법제화 거론
- 2005. 3. : 외국 사례, 국회의원별 법제화 추진방향 등 위원장 보고
- 2005. 3. 31., 2006. 2. 1. :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정성호·유기홍·이원영 의원 보좌관,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강순원 한신대 교수 등 참석

나. 인권교육법제화 TFT 구성·운영(2006. 4. ~ 10.)

- 구성(총 11명) : 외부 9명(교육가, 법률가), 내부 2명
 - 위원장 : 최영애 상임위원위원
- 운영
 - TFT 회의(총 10회) : 인권교육 심의·의결체계, 실행체계 등 인권교육법제화의 주요 쟁점 정리·논의('인권교육법제화 쟁점' 자료집)
 - 조문화 소모임 구성(워크숍 2회)
 - 인권교육에관한법률안(TFT안) 확정 및 활동 종료

다. 인권교육법제화 관련 의견수렴

- 인권단체 및 인권교육 전문가 간담회(9. 13.)
 - 인권교육법제화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TFT가 정리한 쟁점 사항 중 인권교육의 정의, 심의·의결체계와 관련하여 논리적 보완 요청

- 인권교육 합동전문위원회 개최(9. 19.)
- 상임위원회(9. 21) 및 전원위원회(9. 25.) 개최
 - 인권교육법제화 추진 경과 및 주요쟁점
- 관련부처 실무회의 개최(11. 24.)
- TFT안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2006. 10 ~ 11)

라. 인권교육에관한법률안(초안) 확정 및 의견수렴

- 인권교육법제화 관련 인권위원 워크숍(2007. 3. 6.)
 - 인권교육법 쟁점(인권위원회 설치·구성, 인권교육종합계획수립 등) 관련 논의
- 인권교육에관한법률안(초안) 확정(3. 12, 전원위원회) 및 의견수렴, 부처협의
 - 의견수렴 : 홈페이지 게시 및 각 부처·시민단체 의견조회(3. 16 ~ 3. 30)
 - 인권사회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3. 27), 합동인권교육전문위원회(3. 28)
 - 관련부처 협의(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4. 2) 및 공청회(4. 4)

마. 향후 추진 일정

- 전원위원회 상정 및 논의(4월중) : 의견수렴 부처협의 내용을 반영한 최종안 작성, 보고 및 심의·의결
- 입법화 추진(4월 이후) : 입법화 방안 확정, 최종안 발표 및 입법화 추진

IV. 법안의 주요 내용

□□ 법안의 구조

- 구성 : 본 법안은 총 15개 조로 구성
- 성격 :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률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최소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근거만 규정함
 - ※ 기본법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과 지원법의 성격을 취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고 있으나, 선언적·상징적 의미를 담은 기본법 형식을 취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안의 주요내용

가. 인권교육의 개념 및 기본원칙(안 제2조 제1호 및 제3조)

-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개념을 원용하여 인권교육의 정의 및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제시
- 개념 : 인권에 대한 인지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키우고 실천력을 길러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 하는 교육적 활동
- 기본원칙 : 인권에 대한, 인권을 위한, 인권을 통한 인권교육 실시

나. 인권교육 대상과 권리 및 의무(안 제4조, 안 제6조 내지 제8조)

-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백히 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사람의 인권교육 받을 권리를 존중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서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업무 규정
- 공공기관은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책무와 협조의 의무가 있음

다. 인권교육 심의·의결 기구 및 실행체계(안 제9조 내지 제11조)

- 인권교육위원회 및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설치
 - 인권교육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 설치
 -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조정 등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설치근거 및 협의회 위원 구성 근거 마련
 - ※ 인권교육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의 참여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체계 등을 감안, 소위원회로 상정하였으며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관계자 협의회 관련 조항을 포함시킴
- 인권교육 종합계획 등의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 인권교육 정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 마련하여 종합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 제출
 - 대통령은 종합계획 권고안을 존중하여 인권교육 종합계획 수립
-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교육감 등은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시행계획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라. 인권교육 기관(안 제13조)

-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원을 설치하고 주요 업무에 대하여 규정

마. 인권교육 모니터링·지원시스템 구축(안 제14조 및 제15조)

-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협조 의무
-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인권관련 기관·단체, 국내외 학술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 조문별 주요 논거

가. 법안 명칭

□ 필요성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관련 등 교육 일반적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영역이기도 하여 향후 논란을 줄이기 위해 소관 부처와 법안의 성격 및 명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률로 제정을 추진하더라도 이 법이 공공기관 및 학교와 시민사회 현장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 부처간 협력이 고려된 법안 성격 및 법안 명칭에 대한 검토 필요
- 인권교육법을 기본법, 지원법, 진흥법 등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 과학교육진흥법 등 교육관련 **진흥법**은 소관부서가 교육인적자원부이며, 통일교육지원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 교육관련 **지원법**은 소관부서가 통일부, 문화관광부 등 교육부 이외의 타부서 임

□ 제정방향

- 기본법적 성격을 취하고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명문화 하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근거만 규정

□ 이유

- 법률은 선언적, 상징적 의미를 담은 기본법 형식을 취하고 필요최소한의 내용만을 담보하고 각각의 내용은 시행령 제정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법률이 공공기관 및 학교와 시민사회 현장의 인권교육 전반을 포괄하고 있기는 하나 현행법률 상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가진 기관임

□ 법조문

- 인권교육에관한법률

나. 용어의 정의

□ 필요성

- 인권교육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인권교육” 개념에 대한 정의 필요
- 유엔의 인권교육 개념에 대한 포괄적 규정과 우리 사회 내 인성교육 등 유사 교육개념 등으로 인권교육 혼란 가능성 내재
- 유엔에서 제시하는 인권교육의 원칙과 인권의 역사성을 살리는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 필요

□ 제정방향

- 인권교육은 개념 등 논란의 소지가 큰 개념은 법률 상 명확히 하되 UN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개념을 반영

□ 이유

- UN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개념을 원용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고 상충되는 다양한 의견의 합일점을 도출

※ UN 인권교육 10개년 계획 :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인권교육의 하위 목적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 지역, 민족, 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

□ 법조문

- UN이 제시한 인권교육 개념을 원용
 - “인권교육”이라 함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다.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

□ 필요성

- 유엔이 제시한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가치 기준 및 지향점을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제정방향

- UN이 제시한 인권교육 개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이유

-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기준을 방향으로 제시함으로써 강제성이 약한 법률을 보완

※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권고하는 인권교육활동의 원칙

- a)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와 개발권(rights to development)을 포함하여 인권의 독립성, 불가분성, 보편성을 장려한다.
- b)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인종,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다른 견해, 국적, 인종 혹은 사회적 기원, 신체적 혹은 정신적 상태 등 기타 사항에 근거한 편견을 반대하도록 육성한다.
- c) 지속적 혹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인권문제(빈곤, 물리적 갈등과 차별을 포함)를 분석하도록 격려한다. 그 분석은 인권 표준에 부합하는 해결로 이끈다.
- d) 공동체와 개인들이 그들의 인권 요구를 적시하고 실현하도록 힘을 기른다.
- e) 상이한 문화적 맥락에 맞는 인권 원칙을 세우고, 각 국가의 역사적, 사회적 발전정도를 고려한다.
- f) 지방, 국가, 지역, 세계적 수준의 인권문서들과 인권 보호 기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기른다.
- g) 인권에 관한 지식, 비판적 분석과 행동기술을 포함하는 참여적 교수방법을 사용한다.
- h) 참여, 인권향유, 인격의 전면적 발달을 고무하도록, 결핍과 공포 없는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 i) 학습자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을 맺는다. 학습자가 인권을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그들이 사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조건의 현실로 전환하여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조문

- 기본 원칙

- ①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
- ②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이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인종, 성, 언어,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옹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 기타 사항에 근거한 편견·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삶과 연관된 인권현안 문제를 국제적 인권기준에 의거하여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적 교수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 인권교육 대상과 권리 및 의무

필요성

-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권교육을 정부시책교육 중 하나로 이해하여 선택적으로 실시. 인권교육을 국민의 하나의 기본권으로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 필요
- 인권교육의 전국적 확산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인권교육 정책에 대한 주요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

제정방향

-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우선 명시하고 국가 등의 의무사항을 적시
- 학교와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되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근거만을 규정하고 민간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촉진

이유

- 인권교육을 국민의 권리로 선언하고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을 규정
- 민간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제가 곤란할 뿐 아니라 인권교육은 개념자체에 자발성과 모든 주체의 참여가 내포되어있는 만큼 의무교육의 경우에도 그 정도를 최소화

□ 법조문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모든 사람은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이 포함된 각 교육단계와 교육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2. 인권교육에 필요한 자원마련과 시설의 지원
 3. 인권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인권교육 시행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인권교육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학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협조
 - ①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인권교육에 관한 소관 업무별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의 책무
 - 공공기관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은 소속 종사자를 국내외의 인권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인권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마. 인권교육 심의·의결·조정 기구

□ 필요성

- 인권교육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부처 및 시민사회, 인권교육 전문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 인권교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심의·의결·조정 기구 필요

□ 제정방향

-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UN이 권장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민주적 인권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기구의 구성
-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체계와 흐름을 존중하면서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이유

- 인권교육 관련 기구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요청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및 기구 신설과 관련한 변화된 입법적 현실적 고려

□ 법조문

- 소속
 - 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둔다.
- 업무
 - 인권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계획 및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설치
 -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권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공공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그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인권교육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의 종사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인권교육 기관

□ 필요성

- 학교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촉진·지원하고 교육 모델을 제시할 교육원(가칭)을 설치할 필요 있음

□ 제정방향

- 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할 것과 관련한 법적근거만 마련하는 수준으로 규정

□ 이유

- 인권교육원은 인권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규모로 반드시 필요한 기능만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구성, 운영 관련 사항은 시행령 등에 위임하고 법률에는 그 근거만 마련하는 수준으로 해야 할 것임

□ 법조문

- 설치
 -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원을 둔다.
- 업무
 - 인권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분야 전문가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위탁한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인권교육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인권교육프로그램 등 인권교육자료 연구 개발·보급 및 관리
6. 국내외 인권관련 정보·자료 수집과 연구 및 간행물 발간
7. 인권교육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육성
8. 인권교육관련 국제협력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위·수탁 및 부대사업

사. 인권교육 실행체계

필요성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 규정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인권교육 정책수립·집행체계 구축 필요

제정방향

-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에 걸맞고 차별금지법 권고안 등 다른 입법 사례와 일관성 유지

이유

-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집행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정책NAP를 직접 수립하지 않고 정부에 NAP 수립권고만을 기존사례 반영

법조문

○ 인권교육종합계획 권고안 수립

- 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이하 “종합계획 권고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종합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종합계획 권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인권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등에 대한 주요 인권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실태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종합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 대통령은 제1항의 종합계획 권고안을 존중하여 인권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10조 제3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 인권교육 모니터링·지원 시스템 구축방안

필요성

- 인권교육법이 선언적 규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 필요
- 각 기관·단체 등에서 인권교육이 자발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촉진·지원 방안 필요

제정방향

-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실시 여부는 지향점과 방법 등에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 기관·단체 등의 인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유

- 각 기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UN의 인권교육 원칙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 평가와 모니터링 필요
- 인권교육법이 각 기관·단체의 인권교육에 관한 지원·촉진의 성격을 가진다는 근거 마련 필요

□ 법조문

○ 실태조사 등

- ① 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서 이 법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장 및 실태조사 등의 결과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이나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인권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 ① 위원회는 인권증진과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인권교육 연구 등 인권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을 한 기관 또는 단체
 3.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1항 각호의 기관의 인권교육 활동과 인권보호·증진 행사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붙 임 】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초안)

법안내용	제안 취지
<p>인권교육에 관한 법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에 관한 기본법적인 법안의 성격을 담지하면서 다른 법률체계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명칭 고려 - 국가인권위원회법상(제19조제5호 및 제26조제1항)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사항이지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 관련 등 교육 일반적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영역이기도 하여 논란을 줄이기 위한 명칭 제시
<p>제1조(목적) 이 법은 인권교육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기본적 인권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의 목적이 인권교육을 촉진하여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의 방지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법의 목적으로 규정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이라 함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교육의 개념 등 논란의 소지가 큰 개념은 법률상 명확히 하되 인권교육의 원칙과 역사성을 살리면서 유엔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개념을 반영하여 정의 -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기관 용어 정의를 도입하여 규정함
<p>제3조(인권교육의 기본원칙) ①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이 제시한 바람직한 인권교육의 가치 기준 및 지향점을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p>②인권교육은 학습자들이 차이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견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 기타 사항에 근거한 편견·차별행위를 반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③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속한 공동체의 삶과 연관된 인권현안 문제를 국제적 인권기준에 의거하여 분석·비판·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④인권교육은 인권이 보장되는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중심적 교수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p>	<p>-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권고하는 인권교육활동 원칙을 반영하여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원칙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강제성이 약한 법률을 보완하고자 함</p>
<p>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 인권교육 받을 권리를 모든 사람의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여 인간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는 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음</p>
<p>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6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p> <p>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규정에 따른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이 포함된 각 교육단계와 교육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과 시행 2.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마련과 시설의 지원 3. 인권교육 관련 전문 인력 양성 4. 인권교육 시행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인권교육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p>-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인권교육을 정부시책교육 중 하나로 이해하여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사람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교육 실시의 의무화를 선언적으로 규정함</p> <p>-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인권교육의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 촉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p> <p>-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 민간영역에서의 인권교육은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p>

<p>의 이행</p> <p>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시설 및 사업장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그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p>	<p>권장사항으로 규정</p>
<p>제7조(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의 책무)</p> <p>①공공기관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소속 종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공공기관은 소속 종사자를 국내외의 인권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인권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 공공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하는 근거 마련</p>
<p>제8조(공공기관의 협조)</p> <p>①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인권교육에 관한 소관 업무별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 인권교육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 공공기관 상호간의 협력이 절실한바 이를 규정함</p>
<p>제9조(인권교육위원회 등)</p> <p>①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인권교육위원회’를 둔다.</p> <p>②인권교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인권교육 시행계획 및 지침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교육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p>- 최근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입법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며, 유엔이 권장하는 인권교육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기 위해 인권교육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위원회 형태로서 ‘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p>

<p>정되는 사항</p> <p>③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p> <p>①위원회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5년 단위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이하 “종합계획 권고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종합계획 시행 1년 이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종합계획 권고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인권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3. 민간부문 등에 대한 주요 인권교육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권교육 실태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인권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p>③대통령은 제1항의 종합계획 권고안을 존중하여 인권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인권교육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우리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투입하여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한 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한 주무관서로서 인권교육의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부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종합계획 권고안을 마련하도록 함.</p> <p>- 이 권고안에 의거 국가가 관련 부처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 인권교육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 수립</p>
<p>제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p> <p>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및 시·도교육감은 제10조 제3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②위원회는 제1항의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세부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제12조(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등)</p>	<p>- 인권교육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p>

<p>①위원회는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과의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②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권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협의회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기관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그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인권교육 활동을 하는 인권단체의 종사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p>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종사자, 인권교육전문가, 인권단체 활동가 등으로 민관합동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p>
<p>제13조(인권교육원 설치 등)</p> <p>①위원회는 인권교육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원을 둔다.</p> <p>②인권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분야 전문가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2.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인권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7조 제2항에 의거 공공기관이 위탁한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인권교육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5. 인권교육프로그램 등 인권교육자료 연구 개발·보급 및 관리 6. 국내외 인권관련 정보·자료 수집과 연구 및 간행물 발간 7. 인권교육원 이외의 자가 행하는 인권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육성 8. 인권교육관련 국제협력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위·수탁 및 부대사업 <p>③ 인권교육원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인권교육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혜자에게 그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 인권 교육적 원칙을 준수하는 인권전문가를 양성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균질화된 인권교육을 시행·지원하는 인권교육 전문 교육훈련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설치하는 근거 마련</p> <p>- 학교 및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촉진·지원하는 역할 담당</p>

<p>제14조(인권교육 실태조사 등)</p> <p>①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서 이 법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p> <p>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실태조사 등의 결과 인권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해 기관이나 단체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③공공기관은 인권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위원회의 조사 및 시정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각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본 법안의 각 규정이 선언적 규정으로 끝나지 않고 실행력을 담보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 명시</p>
<p>제15조(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p> <p>① 위원회는 인권증진과 인권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인권교육 연구 등 인권교육 관련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p> <p>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을 한 기관 또는 단체</p> <p>3.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학술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1항 각호의 기관의 인권교육 활동과 인권보호·증진 행사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③그 밖에 인권교육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인권교육이 생활현장과 밀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시민사회·지역사회 등 사회 모든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촉진하는 지원 근거 마련</p>
<p>부칙</p> <p>이 법 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토론 1
..... 신인철 팀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 토론 2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토론자료
..... 신승렬 사무관 (중앙인사위원회 인력개발국)

- 토론 3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공청회 토론문
..... 임재홍 교수 (영남대학교)

- 토론 4
.....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 토론 5
인권교육법안 공청회 토론문
..... 송병춘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토론 6
인권교육에관한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 이창수 대표 (새사회연대)

- 토론 7
인권교육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토론
..... 오완호 사무총장 (한국인권행동)

- 토론 8
인권교육에관한법률안 검토 의견
..... 김영원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안) 관련

신인철 팀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폭력대책팀)

교육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그런데 교육법에서 제시하고 있듯 반드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학생의 인권이나 인격이 교육이라는 명분하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침해되는 경우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인권(HUMAN RIGHTS)과 교육 중 어느 것에 무게를 더 둘 것인가? 그리고 인권보호의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견해에 따라 논란이 있을 것이다.

인권이란 대체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성별, 인종, 계급, 문화, 학력, 출신지 등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권존중의 기준과 범위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일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시대와 사회를 떠나 인권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성폭력 등 타인을 해치는 행위도 인권에 대한 의식이 없거나 미약해서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성폭력 등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법의 하나는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준비중인 국가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은 필요하리라 본다.

다만, 본 법을 제정할 때는 다음 사항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 본다.

첫째, 지나치게 “인권”에만 초점을 두고 법을 제정할 때는 이를 시행하는 교육기관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법의 실효성 문제와 불이행에 대한 책임문제가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고, 학교현장은 인권으로 몸살을 겪을 수 있다.

현재 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과 주5일제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안전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을 각각 시간을 내어 교육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일면 이러한 교육은 범교육활동을 통해 잠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은 현재 별도의 시간 또는 범교육활동을 통해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인권의식 제고는 이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천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이를 위한 조항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본 제정(안)은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이 되고, 나머지 관련 부처나 기관은 대체로 인권위원회의 계획에 따라야만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인권위원회와 관계 부처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제정(안)에서는 관계부처나 기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럴 경우 인권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협조하도록 명문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두 법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반드시 필요하다면 법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법률을 제정할 때는 최대한 현실을 고려하여 다각적이면서도 각 계각층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토론토론자료

신승렬 사무관 (중앙인사위원회 능력발전과)

1. 제정 취지 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교육훈련 관장기관으로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국가 공무원 중 교원과 외교공무원 등의 일부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총괄하고 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은 그 목적(제1조)에서 '교육훈련을 통하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와 맡은 바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배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적 자세에 인권 의식이 포함되어야 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의거해 중앙인사위원회는 <2007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서 인권교육을 중점 추진되어야 할 정부 주요 시책교육의 하나로 포함하여 전 부처로 배포한 바 있다. 다만,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FTA 등 시책교육이 필요한 사안들이 대폭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별 법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무를 부가하는 경우 교육훈련 관장기관 및 교육훈련 기본법을 둔 취지가 무력해지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물론 현안보다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사안이라는 점은 이해하나, 중앙인사위원회로서는 각 기관들의 교육관련 법 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사안의 중요성 못지않게 기관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함을 밝혀둔다.

2. 조문상 현실적 운영가능성 문제

필요성과 별개로 제정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개별 법조문 일부에서 현실적 운

영가능성 및 효율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 10조(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와 제 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 이러한 문제가 주로 발견되는 바, 이 두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우선 제 10조의 경우 인권교육종합계획을 복잡한 절차에 의해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그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구체적으로 동 조항은 먼저 인권위에서 인권교육의 종합적 방향등을 담아(제2항) 종합계획 권고안을 만들고(제1항), 이를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제3항) 규정하고 있는 바, 굳이 이렇게 이중적 절차를 취할 필연적 이유를 찾기 힘들다.

국가인권위 측에서 이렇게 제정한 이유를 인권위의 성격상 권고는 가능해도 직접 계획을 입안해 시행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이 필요한 집행업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조문에서의 규정처럼 "대통령이"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 그 실제, 실무적 주체는 누구냐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된다.

물론 시행령에서 이를 특정 부처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부처가 이를 수립하게 되건 결과적으로는 해당 부처 실무선의 단독 작성은 어려울 것이고, 특히 인권교육이 주로 요구되는 정부기관들 (경찰청, 국방부, 경찰청 등의 권력기관 및 교육부, 노동부 등 교육 관련기관)의 개별 계획을 취합하는 형식으로 계획이 작성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 본조 제 2항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방향을 정하는" 종합계획 수준이 아닌 제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에 가까운 계획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교육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작성하는 것이 아닌 직접 계획을 입안하는 방향으로 보다 간결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제 11조의 현실적 운영가능성 문제이다. 우선 제11조 조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 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중략)...은 제 10조 제3항의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에 의할 경우 모든 중앙부처가 1년 단위의 인권교육 세부시행계획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위에서 이미 언급된 '인권교육이 주로 시행되는 권력관계 부처와 교육관계 부처'를 제외하고는 그 교육대상이 직원 교육으로 한정되는데, 특정분야의 직원 교육을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부실하고 이행도 힘든 계획을 만들도록 강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로도 중앙부처 교육훈련 담당자들의 업무가 많고 인력지원은 대단히 열악한 현실이다¹⁾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인권교육 세부시행계획이 얼마나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을가에 대해 의심이 드는 것이 솔직한 의견이며, 그 대안으로 동 조항을 전 중앙부처에 강제하도록 법제화하기보다 대규모의 공무원이 소속되거나, 민간인 대상으로 교육을 주관하는 부처(경찰청,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입법기술상 시행령상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3. 조문의 명확성과 중복성 문제

다음으로는 일부 조문의 불명확성과 이에 따른 중복 문제를 짚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6조와 제7조의 문제이다. 제6조 제1항은

제 6조(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자체는...중략...교육시설이 포함된 각 교육단계와 교육영역에서 체계적이고 항구적으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또 7조에서는

제 7조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인권침해, 차별행위의 예방을 위하여 소속 당사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력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 의견으로는 이 두 조항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인권위 측에 이 두 조문의 입법의도 및 구체적 사항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제6조는 주로 공무원에 대한 교육보다는 각종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예: 학교, 교도소, 하나원 등)에서의 인권교육 임무에 대한 것이고, 제7조는 국가나 지자체, 학교 등에서 소속기관 직원에 대한 교육 책무에 대한 규정이라는 답을 들었다. 그렇다면 공무원 교육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제7조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문맥상 제6조도 공무원 교육 부분을 굳이 배제하는 조문으로 해석될 이유가 없다. '교육시설이 포함된 각 교육단계와 교육영역'에는 당연히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 영역이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조문은 명백하

1) 2006년에 중앙인사위원회가 시행한 「2005년도 교육훈련 종합평가」에 따르면 전체 50개 부처 중 교육훈련 전담과를 갖춘 기관은 1개(경찰청), 5급 이상의 교육훈련 전담자를 보유한 기관도 6개(12%)에 불과하며 전담 실무자 보유기관도 11개(22%)에 그치고 있다.

게 중복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제6조와 제7조는 동일 조항 속으로 포섭하거나 각 조항의 대상에 대해 명확하게 다시 지정하는 방향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 공청회 토론문

임재홍 교수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I. 들어가며

1. 인권교육에 대한 강조는 매우 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처럼 인권투쟁을 통해서 인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계수하였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인권사회로 가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2. 인권교육은 우리 사회의 모든 기관이 수행해야 할 과제이지만 모두에게 바라기보다는 그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할 주체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이하 '안'으로 약칭)을 만들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II. 기본법의 필요성

1.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을 망라하는 인권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 교육에서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기본법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권의 발전방향이 보편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것이 현실의 흐름까지 규정하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2. 이런 점에서 현실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처럼 대학이 서열화되고 입시위주의 공부가 만연한 상황에서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

한 조건이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교사들이 인권교육의 실시를 새로운 잡무로 인식하거나, 학생들이 입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무시해버리면 인권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단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기관에 인권교육의 책무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힘들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작업과, 인권지향의 사회에서 당연히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문화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3. 종래 입시위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인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초중등교육에서 전인교육이 실시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만 인권교육은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인권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과 문화의 조성에 해당되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

III. 법률안에 대한 몇 가지 지적

1.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

안 제4조에서는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장되는지에 대한 법적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헌법에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법정주의를 취하고 있다(제31조). 이 점에서 법률로서 인권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 등이 이 권리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각급 학교에서 교과과정의 하나로서 인권교육의 과목을 규정하여야 하는데 그 경우 관련법령의 개정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면서(제6조) 각급학교의 직접적인 인권교육실시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이는 면도 있다.

2.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

안 제1조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체계를 갖추어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3. 계획 수립의 단계에 대한 고려

법률안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 보인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안 제6조 제2항 제2호), 인권교육위원회의 인권교육 시행계획 및 지침 수립(안 제9조 제2항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권고안(이하 “종합계획 권고안”이라 한다)의 마련 및 대통령 제출(안 제10조 제1항), 대통령의 인권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수립(안 제10조 제3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1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

법률안의 규정만을 보면 교육계획의 수립이 매우 혼란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침으로서 종합계획권고안을 인권교육위원회가 수립하고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안으로 채택하여 대통령에 제출하면 이를 확정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 인권교육 실시 기관

인권교육의 실시기관으로 안은 공공기관과 국내외의 인권기관을 상정하고 있다. 이 경우 교육담당자는 인권강사를 말하는데, 공공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 인권강사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방식, 강사가 있는 인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방식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개념 중 인권교육과 공공기관의 개념은 정의되어 있다(안 제2조). 그러나 인권기관, 인권분야 전문가, 인권교육강사의 개념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은 시행령이나 위원회 규칙으로 보다 명확히 정의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인권기관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5. 국가인권위원회의 부속시설로서 인권교육원

실제 인권교육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집행, 실태조사,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인권교육원이다. 우리 인권교육의 전문성과 대중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일이 인권분야 전문가, 인권교육강사의 양성이다. 그 역할을 누가 수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인권교육원이 이러한

업무까지 수행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작은 정부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중의 하나로 인권교육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업무수행부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될 것이다. 또한 실제로 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관은 교육기관 즉 대학이 된다. 또한 이론적인 학습과 커리큘럼만으로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없기 때문에 인권단체의 역할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해 보인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토론

송기춘 교수 (전북대학교)

1. 인권교육의 목적

인권은 삶의 기초이며 사회를 구성한다. 그러기에 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가 된다. 그 동안의 인권의 신장은 괄목할 만하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등장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구금·보호시설, 군대, 학교, 그 밖의 공공기관, 사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구제하고, 그 사전적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다. 국가의 인권정책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보다 나은 인권국가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보다 인권교육을 충실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이하에서는 “법률안”이라 한다)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법률안은 인권교육의 큰 틀을 정하는 내용으로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나 좀 더 나은 인권교육을 위한 규범의 정립을 위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2. 인권교육의 목적

법률안에서는 인권교육을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습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 품성을 키우며 인권침해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 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실천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일체의 교육적 활동”(제2조 제1호)이라 정의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인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습득(인지적 측면), 둘째, 인권존중적 가치와 태도 품성의 함양(의식적 측면), 셋째, 인권침해 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기르고, 타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실천력 양성(실천적 측면) 등 세 가지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인권장전에 나타난 원칙이 잘 반영되어 있다. 이에 기초하여 제3조에서는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잘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을 정부기관의 권한행사의 근거를 넘어서 일종의 인권교육 문서로 생각하는 건 어떨까? 인권교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인권교육과정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이에 관한 수많은 문서를 통하여 이뤄지는 것이고, 그 문서 가운데 하나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다면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은 그 자체로 인권교육에 봉사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즉, 이 법률이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 등이 시민이 일정한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았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의 보편성·불가분성·상호의존성”이라는 표현은 중등교육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심지어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가 되지도 못한다. 색상 표현에서 ‘살색’과 ‘연주황색’ 그리고 ‘살구색’이 가지는 ‘차별적’ 의미처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을 써서 법률을 만드는 것은 인권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른 용어를 써서 본래의 개념이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충분히 다른 표현을 써서 더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면 굳이 이 방법을 피할 일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어야 할 것이다.

3. 인권교육의 적용 범위

법률안에서는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제1조)하고자 하며, 그 한 부분인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제2조 제2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률안의 시행령(안)이 함께 마련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공기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이 가운데 특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는 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대상으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 “법인, 단체 또는 사인” 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법률안의 ‘공공기관’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인, 단체 또는 사인’ 가운데 언어의 사용상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들의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조사할 수 있음에도 법률안에서는 이들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로 포섭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학원은 필히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시행령에서 명시할 것이 아니라 제2조 제2호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학원”으로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교육현장에 관한 연구에 따라서는 학교에서보다는 학원에서 차별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 사교육에서의 인권침해가 교육효과를 얻기 위하여 쉽게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기업을 ‘공공기관’이라고 하여 포함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체(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체)도 별도로 명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된다.

‘시민사회’에서의 인권교육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법률안에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사교육기관이나 기업체를 공공기관에 포함시킬 수 없다면 ‘시민사회’의 내용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아닌 시민사회단체(반드시 인권단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과도하게 인권교육이 이뤄지는 것도 오히려 인권에 반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에 관한 지식이나 감수성이 매우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안 제7조에서 인권교육의 책무를 부담하는 기관은 공공기관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일정한 단체나 개인도 포함시켜 제2조에 정의할 필요가 있다.(이하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함시켜 ‘공공기관 등’이라고 한다.)

4. 인권교육의 책무는 누가 지는가?

법률안 제7조는 제1조 및 제2조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사항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권교육의 책무를 공공기관만 질 것인가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인권교육은 공공기관 이외에도 공공기관이라고 일반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단체나 사인도 인권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시키든지 별도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제7조의 인권교육의 책무를 지는 기관도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둘째, 공공기관 등의 소속 종사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것이

지만, 소속 종사자도 그 담당 업무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 직원, 중간책임자, 최고의사결정권자는 인권교육의 내용과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특히 그 기관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은 인권교육의 정도가 매우 높지 않으면 안 된다. 자칫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여지도 있으므로 교육의 정도와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큰 틀을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법률안에는 제3항 정도에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의 수준과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근거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들 기관 내부에서 이뤄지는 인권교육은 실속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공공기관 등이 인권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판단으로 국내외의 인권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인권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최소한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 담당자, 책임자 등은 국내외 외부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일 년에 몇 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장차 인권의 수준이 높아질 때는 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겠고 오히려 바람직하겠지만 인권교육 실시 초기에는 인권교육의 큰 틀을 잡아야 하고 기존의 인권침해적 요소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외부의 교육의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제2항에 “공공기관 등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국내외의 인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상자의 범위와 교육의 내용 등은 시행령으로 정한다.”는 정도의 규정을 두는 게 좋겠다.

5. 인권교육위원회

법률안의 중요 부분은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인권교육원의 설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면 이 법률안은 ‘인권교육위원회와 인권교육원의 구성 및 설치에 관한법률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제9조를 보면 인권교육위원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한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본래 가지고 있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인권교육이었고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이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되지만, 인권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규칙’ 정도에 위임할 것이라면 무엇 하러 이러한 법률안이 필요할지 의문이다. 그럴 거라면 차라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한 조문으로 인권교육위원회와 인권교육원의 근거규정을 두지 단행법률을 만드는 의도는 무엇인

가? 그만큼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인권교육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별도의 법률로 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인권교육위원회와 인권교육원의 구성과 운영의 큰 줄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규정이 되어야 한다. 그야말로 시행규칙 정도로 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위원회나 인권교육원이라면 굳이 단행 법률이 필요 없는 것이고, 단행 법률로 만들 인권교육위원회와 교육원이라면 적어도 법률로써 그 구성과 운영의 큰 줄기는 정하여야 하는 것이 위임입법의 법리에 맞다고 생각한다.

제7조 제3항에 인권교육위원회의 위원 정수, 위원의 수 및 위원장 등에 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위원회 보다는 비중이 덜한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제12조)에는 협의회 의장을 규정하고 있고, 협의회 구성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균형이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 인권교육원의 위치

국가인권위원회가 비판을 받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활동의 과연 인권중심적이고 인권지향적인가 하는 점이다. 활동이 일반 행정기관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한 예로 지방분사무소 설치를 들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에 있고 각 지방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현재 부산과 광주에 있으며, 대구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한다. 본래 대전도 그 대상지였으나 지역의 역량미흡으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다. 이들 구성내용을 보면 광역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 등의 인권침해를 감시할 목적으로 지역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이므로 광역시에 설치된 것은 우연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관료들의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서 인권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본래 '권리구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만들었고, 지역사무소가 있어야 하는 곳은 인권침해가 많고 또 인권침해 구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및 설치의 효과가 크가라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부산과 광주의 설치는 그런 기준에 의한 것 같지는 않다. 대구나 대전이 언급되는 것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인권교육원은 전국의 인권교육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전국적인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장소의 선정도 그런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법안 공청회 토론문

송병춘 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법안 규정의 문제점>

인권교육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인권교육이 필요한 사람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와 소상공인 등이고, 기본권행사를 제한받는 집단인 학생, 병사, 시설수용자 등이다.

성적 소수자, 미혼모, 외국인 등 차별과 편견에 의해 고통받는 소수자들에 대해서까지 인권운동의 지평이 넓어진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성숙되었다는 표현이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인권운동의 중심이 흐려져서는 안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 제3조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에는 사회적 약자 등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계층에 대한 인권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학습활동을 지원하고, 실제로 그 구체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인권교육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공기관에서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공무원, 공안기관 종사자, 교사 등 잠재적으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인권교육의 취지를 살리거나(내용의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본다(피교육자의 열의가 뒷받침되기 어려우므로).

또한 평생교육시설의 장이나 사업주에게 자발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전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오히려 노동조합이나, 자생적 주민조직, 시민단체들이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법안 규정에 대한 수정 제안>

제3조 제2항, 제3항 →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 소수자, 그리고 기본권행사를 제한받는 특수한 계층·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학습하고, 그 구제절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4조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인권을 침해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그 구제절차에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는 「모든 사람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 촉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실시될 수 있도록 인권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담당할 교원의 연수 등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항 삽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조합 및 주민자치조직, 시민단체 등이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문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

1. 서론

- 인권교육에 대한 법적 보장의 의의
 - 인권교육의 전면적 실시
 -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적 의무(obligation) 인식
 - 사회 관행과 법체계의 인권의식 상감하기
 - 선진 인권 주류화를 위한 의식적 노력
 - 비정치·경제(즉 사회) 분야에서의 국제적 기준 적용

-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현재의 기반요소(fundamentals)
 - 사회 각계의 인권에 대한 자의식 해석과 적용
 - 유자격 인권 강사의 부족 또는 양성 체계의 불비
 - 인권교육 프로그램 미비
 - 인권교육의 이론적·전문적 지식체계의 부족

2. 입법 환경과 법안 체계

- 입법 환경의 제 차원

- 행정부 차원

△ 충분한 예산 문제

△ 준비된 인력의 배치 문제

△ 상이하거나 미온적인 부처별 인권교육에 대한 입장(중앙인사위원회와 노동부, 특히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그리고 산업자원부)

-> 국가인권위의 지위 모호

※ 통합적 인권정책 중앙행정부서가 아니고, 이를 용인하는 범정부적 입장도 형성되지 못한 상태

- 입법부 차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도구적·전략적 이용 가능성 상존

△ 대선 등 정치일정으로 인해 국회의 입법 기능 약화

△ 국회내 친 인권 또는 국가인권위에 우호적인 기류의 퇴조

- 인권시민단체 차원

△ 인권단체의 광범한 참여가 부족과 함께 인권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

△ 인권단체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입장이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방향이 제도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

△ 인권단체와 (공적) 인권교육 기관과의 관계 불분명

△ 인권시민단체들의 광범한 지지와 실천을 끌어내기 어려운 조건

- 소결론

따라서 입법 환경은 광범한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 국회에 대한 여론의 힘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입장 조율을 통한 정부안으로 입법을 제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안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임.

현재의 입법환경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는 예산, 조직(인력)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그나마 더 현실적인 추진경로라고 사료됨.

아니면 대선의 선거 공약 채택 등을 통해서 더 근본적인 인권교육에 대한 접근을 차기 정권의 과제로 설정하는 것도 방법임.

□ 법안의 체계에 대한 토론

- 법안은 △용어의 정의 △인권교육의 기본 원칙 △인권교육 대상 △인권교육의 권리와 의무 △인권교육 심의·의결·조정 기구 △인권교육원 설치·운영 △인권교육의 이행방안 △인권교육 모니터링·지원 체계의 구조로 되어 있음.
- 법안의 체계는 총칙적 규정(제1조 - 제8조), 본칙에 해당하는 실체적 규정(제9조 - 제15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법안에서 제6조 - 제8조는 실체적 규정과 총칙적 규정이 혼재되어 정리한 것으로 파악됨.

【 이하 별도 배포 】

인권교육법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한 토론

오완호 사무총장 (한국인권행동)

1. 한국의 인권현실

한국은 전후 눈부신 경제성장 및 인권의 신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자유권에서의 고질적 문제, 즉 국가보안법, 양심수, 구금기관에서의 처우문제, 군 인권 문제 등 수많은 인권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본에 의한 인간 차별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사회권 영역의 인권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의식주 문제는 급등하는 집값 등의 영향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며, 교육권 및 의료권의 보장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 폭등, 고비용의 교육비 및 의료비, 노동시장에서의 비정규직의 급등, 농수산물의 개방화는 한국사회 전반을 빈익빈 부익부 사회를 급속하게 재편하고 있다.

70년대, 80년대의 한국사회를 이끈 정신적 토대였던 민주화 운동은 공동체운동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자본의 논리에 예속되었으며, 인권사상 또한 개인의 권리로만 인식되는 차원으로 한정되었다. 공공의 인권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으로, 공동체의 인권이 아니라 자기 집단의 인권으로 해석되면서, 인권이 아닌 이권의 시대로의 왜곡이 가속화되고 있다.

2. 한국의 교육현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은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 보편의 가치는 한국에서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 한국의 교육은 반 인권적

이다. 한국의 교육은 차별을 가속화하여 계층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인간의 인성을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고비용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의 삶을 피폐화 하는 주범이다. 한국의 교육은 국민을 비인간화하고 잔인한 경쟁주의의 희생물을 양산하는 그야말로 인권침해적 환경을 확대 생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는 개인적 책임이라는 천민자본주의와 경제제일주의의 교묘한 악한 논리의 희생물이 되어왔다. 학생들의 건강권, 정서 함양권, 기본적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과학 및 지식 등 인간경험을 배울 권리, 신체의 자유, 옷을 골라서 입을 권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의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인격적 존재로 존중받을 권리 등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인간존엄성에 관한 기본적 인권과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는 철저히 부정되어 있다. 또한 교사들의 권리도 교육체제와 유교관습에 의해 배제되고 철저히 부인되고 있는 것이 한국의 교육현실이다. 이러한 교육현실과 교육현장에서의 인권문제들의 발생케 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일그러진 교육체제와 교육철학의 부재. 입시교육의 비인간화
- 공교육을 잡아먹은 사교육체제.
- 고비용 구조
- 군사문화의 잔존 및 경제제일주의, 출세주의로 인한 비인간화.
- 학칙 및 선도규정 등 교육현장에서의 반인권적 제도와 관행.
- 경쟁 합리주의 등

3. 인권교육법의 필요성

1990년대에 UN에 의해 제기된 인권교육의 개념은 민간의 각 인권단체들의 활발한 노력으로 한국사회의 시민사회에 소개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족한 후 공공부분, 학교부분으로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민간 인권단체들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인권교육은 한국의 교육현실이란 거대한 장벽 앞에 무기력 하며, 그 노력 및 성과가 교육환경 및 체질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예산, 정부의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부재, 학교 및 공공기관의 배타적 태도, 인권강사의 부족,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미비, 특강위주의 교육 등은 한국에서 인권교육의 장애요소이다.

한국에서 인권교육법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 세계인권선언 제26조 2항의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경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 목표 및 철학을 바꾸어야 한다. 인권교육법이 현재의 잘못된, 인격을 마비시키고 차별을 가속화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 교육제도를 없애는 그 단초가 될 것이다.
- 2) UN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권교육 정책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한국사회에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국제화에 기여 할 것이다.
- 3)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문화의 신장은 학교, 공공기관, 시민사회 등 한국사회 전반에 폭력 및 군사문화를 청산하고 평화지향적인 공동체문화를 확산 할 것이다.
- 4) 인권강사의 양성,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통합적 인권교육 정책수립 및 인권교육의 실행을 가능케 할 것이다.

4. 인권교육법안에 대한 내용 및 토론

1) 총평

인권교육법안의 내용은 평이하다. 입법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관계기관과의 현실적 충돌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인권교육위원회 설치, 인권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설치,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며, 인권교육원설립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많은 인권교육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2) 제 3조 2항에서의 ‘학습자’, 3항의 ‘학습자’ 중심적 교수 방법 등 적당하지 않은 용

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문학적, 언어적, 법률적 측면에서의 적시된 용어에 대한 감수 작업이 필요하다.

- 3) '제 4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권교육의 권리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하다.
- 4) 제 9조에서 인권교육위원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기로 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국가기관에서의 인권업무의 일원화는 불필요한 조직 및 예산집행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케 할 것이다.
- 5) 제 8조에서 '공공기관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특히 지방정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명시되었으면 한다.
- 6) 제 7조 2항에서 '~위탁하여 인권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 위탁하여 일정 기간 인권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 라는 표현으로 강제성을 부과하여야 한다.
- 7) 제 14조 (인권교육 실태조사 등)를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장애요인해소)로 변경하여 제 4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서 인권교육의 제도적 장애요인을 발견할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공공기관 및 단체의 방임에 의한 것이 아닌 제도적, 구조적 차원의 문제이며, 제 14조 2항, 3항과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
- 8) 제 14조 2항과 3항에서 당해기관이나 단체가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적극적 협조를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김영원 활동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1. 법률안에 대한 총평

- 인권교육 법제화는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권리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가 이를 적극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보다 구체적인 법률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이 추진되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임.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현행 인권위법의 인권교육에 대한 소극적 규정으로 인해 인권교육을 강화·확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법률의 제정 이유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법률안에서는 소극적 규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2.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의견

① 제2조(정의) 2항

-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적 성격이 강한 곳까지 확대해야 함. 이 법의 목적이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다수인보호시설이나 구금·보호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의료, 언론 등도 공공기관에 포함되어야 함.

② 제7조(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의 책무)

- 공공기관 내 종사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인권교육을 어떻게 실시할지, 그리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음. 남녀고용평

등법²⁾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교육의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공공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의무규정으로 법률에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실행 방법 및 내용 등 구체적인 시행 계획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야 함.

- 또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의2³⁾ 규정처럼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이 필요함. 이미 제13조 제2항 각 호의 3에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인권교육원을 통해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안이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원과 더불어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이에 대해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이 동시에 있어야 함.

③ 제14조(인권교육 실태조사 등)

- 공공기관의 자발성에 기대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에서는 인권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무함. 인권교육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의 인권교육 실시를 강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규정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마저도 모호함.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함.
- 실태조사 기간이나 조사 후 조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조항의 실효성이 없어 보임. 실태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인권교육 실시 후 당해 기관이 인권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형식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법제화가 선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더불어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권교육 경험을 분석·연구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어 실질적인 인권교육의 체계화를 꾀할 수 있음.
- 실태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9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거나 규모가 영세한 경우 등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업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교육의 횟수,내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99.3.17>

3)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9.2.8>

1. 제8조의2제1항-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15조(인권교육 촉진 지원 등) 제1항 각 호의 2

- 지원받을 수 있는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된 후 3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을 한 기관 또는 단체'로 규정하게 될 경우,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으며, 적절한 기준도 아님.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민간단체들이 많이 있으며, 오히려 이런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인권옹호 활동을 해왔던 단위들이 지원으로부터 소외될 수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등록했다는 것이 그간의 활동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3. 여전히 남는 문제

- 법제화가 된다고 인권교육이 자동적으로 확산되거나 체계화 되는 것은 분명 아님.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TFT를 구성,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에만 치중했을 뿐 법제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들은 마련해 놓지 못한 상황임. 따라서 인권위는 인권교육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인권교육을 확산시키고,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병행해야 함.
- 인권교육의 원칙과 개념,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교육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어, 아래로부터 호응을 받기 어려운 조건에 있음. 특히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공기관 등의 현장에서 법제화로 인해 인권교육이 실시될 경우 또 하나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방식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법률 제정 외에 대중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인권교육의 개념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홍보활동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가야 함.
- 법제화가 되더라도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을 제안·실행하고, 체계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따라서 인권교육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 사이에 경험을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필요함. 지난해 인권위는 인권교육 실천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했지만, 이마저도 줄속으로 준비되면서 인권위 용역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로 전락했음.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교육 전문 인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나아가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로 실천대회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제 목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대 고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대
문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초안) 관련 공청회

대
문